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8. 23 선고 2022가단20176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눔 담당변호사 김성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인서

변론 종결2023. 7. 19.

판결 선고2023. 8. 23.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원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9. 12. 9.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9. 12. 9.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226,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20. 6. 11. 'C은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14. 이후 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은 관련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 12.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9. 12. 12. 내용증명우편으로 D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C과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을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12. 9. 관련소송의 판결금액 621,753,425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20타채69265)을 받았다.

라. 소외 종중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과 위 다.항 기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됨을 이유로 이 법원에 2021. 11. 4. 이 사건 채권액 중 220,356,164원을, 2022. 4. 15. 이 사건 채권액 중 5,068,950원을 각 집행공탁(2021년 금 제3923호 및 2022년 금 제1386호)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 을 제4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부분

원고는, C은 관련소송 진행 도중 원고를 해할 목적 또는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아무런 차용관계나 채무관계가 없음에도 관련소송에서 자신의 소송대리인이던 E 변호사의 부인인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통정허위표시 또는 가장양도계약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8, 19, 20, 21, 22, 47호증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F은행 및 G단체(H)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또는 가장양도계약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부분

원고는, C은 관련소송 진행 도중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3 내지 31, 37호증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의 F은행 및 G단체(H)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C의 거의 유일한 재산이라거나, C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강종선

별지